

기금관리 규정

1991. 1. 12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교통학회의 기금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금의 종류 및 구성

제2조(기금의 종류) 학회의 기금은 학회의 경상회계와 분리하여 장기적 활동강화를 위해 일반기금, 종신회비기금, 퇴직기금 그리고 기타 특정목적의 기금으로 구성된다.

제3조(일반기금) 일반기금은 매 회계년도 말 경상회계의 결산후 일반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누적액으로 구성된다.

제4조(종신회비기금)

1. 종신회비기금은 정회원이 납부한 종신회비로 구성된다.
2. 종신회비기금의 운용수익 중 은행금리에 상당하는 부분을 회계년도 결산시 익년도 경상회계의 수입으로 이체한다.

제5조(퇴직기금) 퇴직기금은 직원의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년 경상회계에서 이체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제6조(특정목적기금) 특정목적기금은 학회의 장기적 활동강화를 위하여 특정한 목적하에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제3장 기금의 관리

제7조(지출 및 승인)

1. 기금은 구체적 사용목적에 관해 이사회에서 결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다.
2. 특정목적기금은 지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3. 퇴직기금은 직원의 퇴직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한다.

제8조(관리책임) 회장은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9조(감사) 감사는 학회기금의 관리와 집행에 관해 매 회계년도말 감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